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35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고민정 · 장철민 · 김동아
박정현 · 김원이 · 문정복
김준혁 · 김종민 · 강경숙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u> <u>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u> <u>3.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신 설></u>	<u>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신 설></u>	<u>⑥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u>

<u><신 설></u> <u><신 설></u>	<u>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u> <u>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u> <u>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u> <u>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u> <u>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활성화</u> <u>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u> <u>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u> <u>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u> <u>야 한다.</u> <u>⑧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u> <u>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을</u> <u>「유아교육법」 제13조 및</u> <u>「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u> <u>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u> <u>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u> <u>요청할 수 있다.</u>
--	---